

아리셀 2심 판결을 거부한다! 인정할 수 없다!

아리셀 2심 판결 기자간담회

일시 : 2026년 4월 28일(화) 오후 1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강당(서울 중구 정동길 2)

**주최 :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I. 아리셀 2심 판결 중 산안법 및 중처법 무죄 부분 검토

<들어가며 : 1심에서 인정한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표(129쪽)>

- 2심에서 23명 노동자 사망과 인과관계 있다고 본 의무위반은 다음과 같음

- 1) 열감지기 설치의무
- 2) 후속 공정 중단 또는 발열 검사 실시 및 분리 보관 의무
- 3) 정기안전보건교육 의무
- 4)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 5) 소방 훈련 및 교육 의무
- 6) 위험성평가 의무

(2심에서 불인정된 것) : 1)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음, 2)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의무 위반 없음

주의의무			인정 여부	위반 여부	인과 관계
리튬 1차전지 보관 · 관리상의 주의의 무	열감지기 설치 의무		○	○	○
	가스감지기 설치 의무		X	X	X
	전지 보관 관련 의무(소분/격벽/차화시트)		X	X	X
선행 폭발 사고 전 지와 함께 생산된 전지들에 대한 안전 조치 관련 주의의무	후속 공정 중단 또는 발열 검사 실시 및 분리 보관 의무		○	○	○
화재 발생을 대비한 안전조치 관련 주의 의무	안전보건교육의무	정기안전보건교육	○	△ ³⁰⁾	○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교육	○	○	○
		특별안전보건교육	X	X	X
	소방 훈련 및 교육 의무		○	○	○
	위험성평가 의무		○	○	○
	비상구 관련 주의의무	비상구 설치 의무	○	X	X
		비상구 · 비상통로 유지 의무	○	○	○

1. 화재가 발생한 3동 2층에 비상구 설치 의무가 있는지(있다면 이행했는지)

가. 비상구를 층마다 설치하는 것은 상식인데, 왜 쟁점이 되었는지?

(㉗, ㉙는 임의로 표기한 것임)

- 【안전보건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㉗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㉙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㉗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의 경우, 1심과 2심 모두 ‘그 방’에 주출입구 외에 비상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그러나 본 사건은 ‘리튬1차전지’를 위험물질이라고 보지 않아서, ㉙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라고 봄. 따라서 리튬을 취급하는 3동 1층만 비상구를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2층에도 설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됨

나. 대형 연쇄폭발의 원인인 ‘리튬1차전지’를 위험물질로 보지 않은 것은 검찰의 과실도 있음

- 산안법상 “위험물질”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함.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 나~하. (생략) - 모두 개별 물질 명시함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 검찰 공소장 26면 등 : “위험물질인 ‘리튬’이 포함된 리튬 1차전지를”과 같이 표현함. 그래서 ‘리튬1차전지’가 <거> 또는 <너>에 해당됨을 보다 명시적으로 주장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음 (현재 공소사실로도 산안법/중처법 유죄가 입증될 수 있다는 이유)
- 법원은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자를 단죄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방어권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서 검찰의 주장을 정리할 책무가 있었음.
- 그래서 법원은 이 사건이 ㉠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각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것임.

※ 리튬 절단 작업을 하는 3동 1층보다, 3동 2층은 리튬이 전지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① 1차전지가 좁은 공간에 모여있고 ② 전해액 주입 후 아직 안정화가 되기 이전이며(7일 필요) ③ 튜빙/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2층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 1심(119~124쪽)

1) 비상구의 정의 :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란 무엇인지 해석해야 함

- ① “안전한 장소”란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피난층임. 피난층 외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이용해야 대피할 수 있음. 즉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곧 “비상구”임.
- ② 다른 법령상 비상구 규정을 보더라도,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등 비상시 지상 등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직통계단 등에 연결된 출입구라고 정해져 있으므로 충분히 “비상구”를 해석할 수 있음
- ③ 건축법에서도 피난층 외 나머지 층에서는 직통계단을 이용해야 대피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음(건축법 제49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2) 구체적으로 각 층별로 비상구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① 꼭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층이 아니어도, 위험물질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

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피 가능해야하므로.

- ② 안전보건규칙 제17조 각 호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따르더라도 사업주에게 과도한 비용을 물리는 것이 아님
- ③ 공업지역의 경우 건폐율(70%), 용적율(400%)이 낮음. 실제로 아리셀 부지도 마찬가지임. 결국 공업지역 건물은 최대 5층임($70\% \times 5 = \text{용적율} 350\%$). 따라서 5개 층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음

■ 2심

2심은 비상구는 각 층마다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봄

① 항소심은 명문의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 유추해석 해선 안 된다고 봄(대법원 2023도17596 판결) (66~69쪽)

㉡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모두 비상구의 ‘설치 단위’임. 그러므로 ㉢는 건축물을 출입할 수 있는 1층에 주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하라는 의미임

각 층마다 설치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면 ㉢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각 층>과 같은 식으로 손쉽게 규정할 수 있었음에도 안 함.

② 항소심의 1심 반박 (67~69쪽)

- 1)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은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면 급박하게 발생 및 확산되지만, 그렇지 않은 층은 “천장과 바닥, 벽체” 등으로 인해 위험 확대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함
- 2)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은 위험물질이 이동, 보관되는 수준이어서 내재된 위험이 발현될 가능성이 낮음
- 3) 원심이 비상구 개념의 해석 근거로 다른 법령을 삼는 것은 지나친 확장, 유추해석임. 다중이용업소법이나 건축법상 ‘직통계단’을 비상구 개념의 핵심 표지로 삼는 것은 “수범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해석 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피해자 대리인의 반론

1)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서 그렇지 않은 곳까지 급박하게 위험히 확산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법원이 안전불감증을 조장하는 셈(빠른 시간 내에 화재가 확산된 안전공업, 부산 반얀트리, 한익스프레스 참사 등)

2) 헌법재판소는 형벌 규정이라고 해도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

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해석방법에 따랐을 때 금지되는 행위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음(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 따라서 비상구의 의미상 그게 무엇인지 해석가능하다면, 굳이 “각 층”을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2) 2심은 산안법 리딩케이스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판결’을 의도적으로 무시함(대법원 2020도3996 판결)

☞ 사실관계 : 2개의 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끼리 충돌해서 붕괴하여 6명 사망(17년 5월 1일)

☞ 2심 : 안전보건규칙 제40조에는 크레인 작업을 할 때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만 정하지, ‘다수 크레인의 중첩작업을 할 때를 대비한 신호방법’을 정해야한다고 정하진 않음. 사업주는 그 신호방법을 정했으니 산안법 위반은 아님

☞ 3심 : 산안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의무 내용, 취지, 사업장 규모,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산재 발생 빈도, 조치에 필요한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함. 그리고 사업주가 일정한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규칙 위반이라고 봄.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였는지를 엄격하게 봐야 함.

조선소에서 크레인 2대 중첩작업에 따른 위험은 충분히 예상되지만 중첩작업에 따른 신호방법을 정하는 등 실질적 조치 없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함

3) 리딩케이스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안전보건규칙상 위험물질이란 <폭발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인화성 고체, 산화성,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임.
- 예를 들어 총 5층 공장건물의 3층에서만 위험물질을 취급한다고 하고 피난층이 없을 때, 2심대로라면 1층에만 비상구가 있으면 됨. 3층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그 방실에만 주출입구 외의 비상구가 있으면 됨. 위험물질이 그 방실을 넘어서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 1층으로의 직통계단이 하나만 있는 경우라면, 3, 4, 5층의 사람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임. 그러나 1층에만 주출입구 외에 비상구만 있어도 된다는 결론임.
- 이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매우 불합리한 결론임. 비상구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이므로, 그 개념상 1층이나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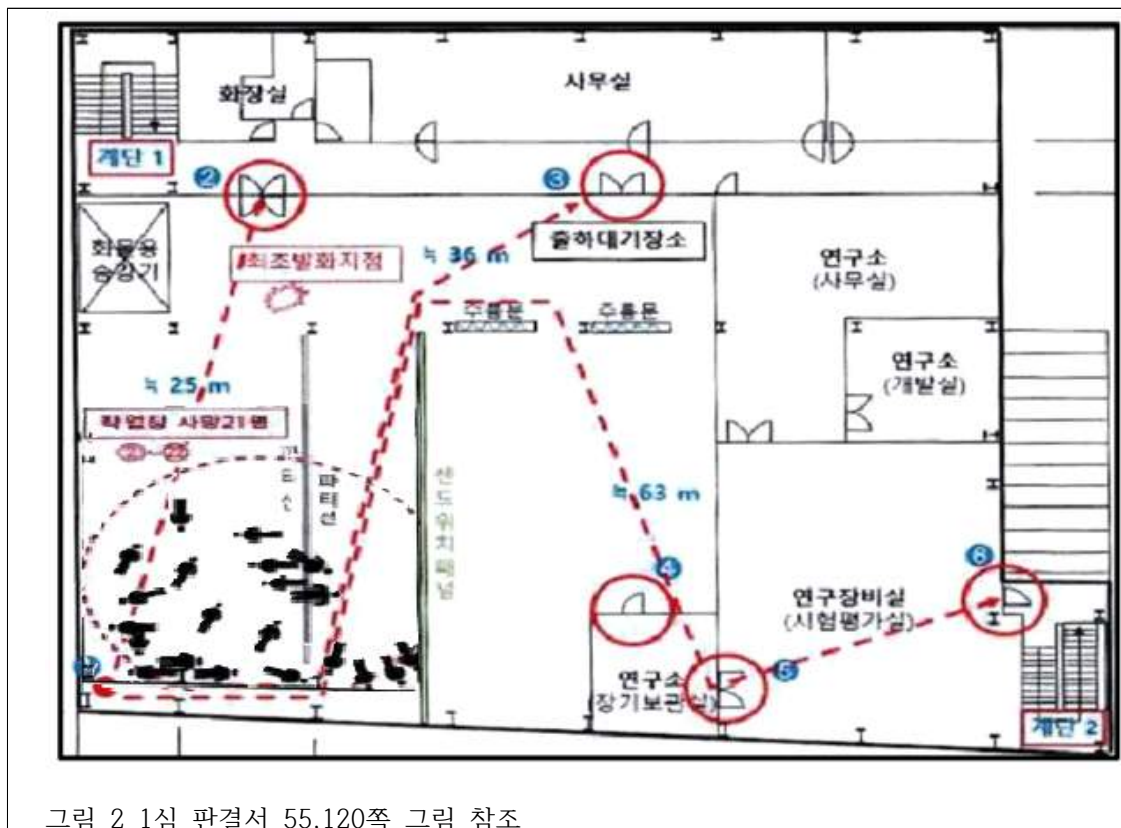
단으로 통하는 출입구라는 내용을 품고 있는 것임. 꼭 건축법이나 다른 법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해석 가능함.

라.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

- 1심 (124쪽) : 비상구는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설치되는 등 안전보건규칙 상의 설치요건은 갖췄다고 보았음
- 2심 :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의무 이행 여부를 논할 이유가 없음

결국 핵심은 안전보건규칙 제18조의 “비상구·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임. 1심은 비상구·비상통로의 유지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봤으나, 2심은 비상구 설치의무가 없는 이상 유지의무를 논할 필요가 없고, 설령 설치의무가 있더라도 유지의무를 다했다고 봄 (이하 설명)

2. 비상구, 비상통로 유지 의무가 있는지(있다면 이행했는지)



- 1심 (126~129쪽) : 비상구, 비상통로 유지의무를 하나로 묶어서 봄
- ①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주출입구 외의 출입구 즉 비상구는 ⑥임

비상구로 향하는 가장 빠른 통로가 ‘비상통로’라고 보고 ④→⑤→⑥으로 가야 함

그러나 ⑤는 평소에 보안이 걸려 있어서 책임급 이상 정직원과 연구소 직원만 보안 해제 가능함. 이 문이 화재를 인식함에 따라 ‘자동 개방’되었어도, 비상구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고, 여기에 비상구가 있다는 교육도 전혀 없었으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② 3동 2층 구조상 샌드위치 패널 때문에 주출입구와 다른 방향으로 대피가 불가능했음

③ 다수 인원이 통로를 이용하기에 좁아 보임

④ CCTV 영상을 보면 최초 폭발 이후 피해자들이 사망자 21명이 발생한 ① 위치로 모여둠. 만약 샌드위치 패널과 벽 사이에 통로가 있었으면 비상구 이용 가능했을 것

■ 2심 (69~71쪽) 3동 2층은 비상구 설치의무가 없음. 설령 설치해야 하는 층이라고 보더라도, 비상구 유지의무를 이행했음

- 비상구가 아닌 ⑤번문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비상구 유지의무 이행의 기준이 될 수 없음
- 원심이 특정한 비상구인 ⑥번 출입문은 이용가능한 상태였음
- ④→⑤→⑥을 기준으로 비상구 유지의무를 보더라도, ⑤는 화재 당시에 자동 개방 되었음. 또, 비상구 이용 교육이 이뤄졌는지의 사정은 교육의무 불이행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을 따질 수는 있어도, ‘비상구 유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

■ 2심 (72~73쪽) 3동 2층에 대해서는 비상통로의 개념 및 설치기준을 확정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비상통로 유지의무를 지울 수 없음

1) 비상통로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1심도 밝히지 않았으나, “비상구에 이를 수 있는 최단의 경로”로 이해한 것으로 보임.

- 비상통로 유지의무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치나 작업자들이 일하는 위치, 작업장이나 건축물의 내부 구조, 사무기구나 물품 등이 놓여있는 위치 등 우연한 사정들과는 무관”하게 작업자들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비상통로’는 어떤 고정된 통로를 전제로 한 개념”

임.

- 그러나 “원심이 설정한 비상통로는 이 사건 화재가 이미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작업자 위치에서 비상구에 이르는 경로를 표시한 것이므로 비상통로라고 볼 수 없음 (비상통로는 곧 ‘일상적으로 쓰이는 통로’임)

■ 피해자 대리인의 반론

- 1) 3동 2층의 리튬1차전지 적재 위치와 작업 위치는 항상 바뀌지 않았으므로, 전제로 고정된 통로를 설정할 수 있음
- 2) 2심이 지적하듯 작업위치가 계속 달라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거기에 맞게 비상통로를 고민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임 (어디서 불났을 때 어디로 대피할 수 있을지)

■ 2심 (72~73쪽) 3동 2층에 대해서는 비상통로의 개념 및 설치기준을 확정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비상통로 유지의무를 지울 수 없음 (이어서)

- 2) 이 사건 공장 3동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상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이 아님
 - 1심처럼 해석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공장을 지어 사업을 영위하는 수범자 입장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 이외에 사업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내용까지 검토하여 ‘비상통로’의 개념을 유추해야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 피해자 대리인의 반론

- 1) 2심이 맞다고 전제했을 때, 2심은 3동의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고, 건축법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임. 그런데 비상통로를 1심처럼 “비상구에 이를 수 있는 최단경로”라고 해석하지 않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통로’라고 해석해도 유추, 확장해석이 아니고 이는 수범자 입장에서 받아들이 수 있는 해석일 것임. 그렇게 본다면, 작업위치에서 봤을 때 최초발화지점에서의 폭발로 인해서 주출입구인 계단 1에 이르는 ❷, ❸ 출입구를 이용할 수 없었음. 2심의 결론에 따르더라도 비상통로 유지의무는 이행했다고 볼 수 없음.
- 2) 2심이 옳으려면 건축법상 허가 단계에서 관할청이 ‘산안법상 위험물질 취급 건축물인지’를 심사했었어야 함(산안법까지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통계단이

건축법만 언급하며 직통계단 1개만 필요하다고 하고나서 나중에 정부가 산안법 위반을 문제삼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 그러나 애초에 건축법상 허가 단계에서는 산안법을 심사하지 않음

■ 2심 (74쪽) 3동 2층에 비상통로 유지의무를 지울 수 있더라도 의무를 이행했음

- 1심처럼 작업자 위치에서 비상구에 이르는 경로가 비상통로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잘못 되었음
- 가) 안전보건규칙에는 비상통로의 넓이, 길이 등에 관한 규격이 없고, “샌드위치 판넬이나 파티션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기준도 없음
- 나) 이와 달리 비상구의 경우 길이, 너비 규격이 있고, 건축법상 피난통로도 규격이 있음
- 다) 아리셀이 설치한 통로는 비상구보다도 넓고, 경로에 물건이 막고 있지도 않았음

■ 피해자 대리인의 반론

최초발화지점이 주출입구인 계단 1에 이르는 ❷, ❸ 출입구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변명도 궁색함. 리튬1차전지뿐만 아니라 샌드위치 판넬도 대피를 막았는데, 판넬을 설치했더라도 비상구를 이용가능하도록 비상시에 부술 수 있는 구멍이라도 만들었어야 함. 이런 상황에서 비상통로 자체가 비상구보다 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3. 중처법 일부 무죄 부분

■ 1심

-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둘 중 한 명만 처벌된다고 보고, 이 경우 대표이사인 박순관이 전자에 해당된다고 봄
- 2) 2단계론, 즉 산안법(안전보건규칙 제18조) 위반을 매개로, 경영책임자가 중처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봄
- 3) 아래 의무를 모두 위반했고 인과관계도 인정함(시행령 제4조)
제1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제3호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4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할 것
 제5호 산안법 제15조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제8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근로자 대피 등 매뉴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조치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 2심에서 무죄가 난 것은 제1호, 제5호임

■ 2심 (106~118쪽)

-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둘 다 처벌될 수 있다고 봄 =
 1심보다 낮게 판단한 부분이 있음
- 2) 2단계론을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중처법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상 인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면 처벌될 수 있다고 봄. 유의미한 첫 사례임.
- 3) 시행령상 의무 중 제1호, 제5호 위반과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
 제1호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렇고, 제5호는 산안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기 때
 문이라고 판단함

■ 피해자 대리인의 반론 (제5호의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의무란 곧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
 리체계 구축의무’임. 법원은 제5호의 의미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
 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
 준’이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수행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항목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제5호뿐만 아니라 중
 처법상 모든 의무가 실제 사업(장)의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보고 의무위반 여
 부를 평가함(두성산업 판례(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고단1429
 판결)
- 또,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
 가하는 기준을 수립한 후 이를 상피고인 H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안내·교육하고 그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하여 인사고과 등에 반영할 것임을

고지하였더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자신들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꼭 안전보건규칙 의무위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2023고단95, 2023고단1448 판결;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도 10267 판결 확정)

- 피고인들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박중언의 업무상과실치사로 인정된 것 중에서도 산안법 위반은 다음과 같음(비상구, 비상통로 유지의무를 빼더라도)
- 1) 정기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안법 제29조 제1항)
- 2)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안법 제29조 제2항, 제3항)
- 3) 위험성평가 의무 (산안법 제36조)

산안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법 제38조, 제39조) 뿐만 아니라 산안법 전반을 지킬 의무가 있음. 그렇다면 경영책임자인 박순관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박중언이 산안법상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안내·교육하고 그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하여 인사고과 등에 반영할 것임을 고지하였더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박중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 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

4. 소 결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신현일 부장판사, 강명중 주심판사가 담당한 이 판결은,

1. 산안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와 기존에 내려진 중처법 판결의 법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런 법리를 모르고 판결을 내렸다면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수준일 것임)
2. 대법원 판결 법리에 반하는 점, 아리셀 3동 2층의 ❶위치로 공포에 질린 피해자 21명이 모여들어서 사망한 점을 무시하고 비상통로 유지의무가 아예 없다거나,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미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점에 비춰봤을 때,

☞ 피고인들을 봐줄 마음을 먹고 판결문을 쓴 것이라고 평가됨

Ⅱ. 아리셀 2심 판결 중 양형이유 검토

<들어가며> 1심과 2심의 형량 비교

피고인	1심	2심	처단형 범위
박순관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징역 15년	징역 4년	1년 ~ 33년
박중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15년	징역 7년	3년 ~ 45년
홍성춘	징역2년(실형)	1년 6월·집유 3년	1개월 ~ 6년
박재형	금고 2년(실형)	금고 1년 6월·집유 3년	1개월 ~ 5년
(주)아리셀	벌금 8억원	벌금 8억원	5만원 ~ 75억원

2심이 양형이유에서 명시한 핵심 판단은 다음과 같음

■ **판단①**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23명 전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하였다. 합의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피해자 측의 피해 감정 표출이나 처벌탄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양형에 있어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판단②** 「피고인들이 기존에 사고가 발생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나 작업상 안전조치가 필요한 세부공정에 대해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나름대로 해 왔고,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을 완전히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판단① 비판 - '23명 전원과 합의'를 양형 핵심으로 삼은 부분

■ 1심

- 1심 선고 시점에도 이미 다수 유족과의 합의가 성립되어 있었음
- 1심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면서도 23명 사망의 결과반가치, 6가지 핵심 안전보건 의무 전면 위반,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를 제한적으로만 반영한 결과 박순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

음

■ 2심

- 2심 단계에서 추가된 합의는 1심의 합의와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이며, 심지어 ‘처벌불원’을 하지 않은 ‘민사합의’에 불관함
- 그럼에도 2심은 "23명 전원과의 합의"라는 외형적 사실을 결정적 감경요소로 삼아 박순관에 대해 11년, 박중언에 대해 8년을 추가로 감형함
- 1심과 2심이 동일한 합의 사실을 두고 ‘별다른 논거 없이’ 형량에서 1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2심 판결은 합의의 내용·과정에 대해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고,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형량을 감하였음

가. 합의를 "민사 손해배상과 별도의 형사적 피해회복 노력"으로 평가한 부분

- 판결문은 합의를 양형에 반영하는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형사 절차에서 금전적으로나마 적극적으로 배상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여러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금전적으로나마 돕기 위함이다.”

1) 산재 사망사고에서 합의는 '별도의 형사적 노력'이 아니라 '민사채권의 일부 변제'에 불과함

- 회사가 부담해야 할 본래의 민사상 책임은 ‘일실수익’, ‘위자료’, ‘중처법 제15조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실손해의 5배 이내)로 구성됨
- 본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은커녕,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었음
-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형사 절차에서 금전적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 본래 채권의 일부도 못 미치는 변제를 한 것'임에도, 판결문은 합의를 마치 회사가 민사책임 외에 별도의 형사적 노력을 한 것처럼 전제하고 양형에 반영함

- 본건 합의는 회사 입장에서 '저가에 민사채권을 변제하면서 형사 양형 감경 효과를 동시에 획득'하는 구조이며, 회사가 부담해야 할 본래의 민·형사상 책임 중 어느 하나도 온전히 부담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함

2) '충분한 피해회복'에 관한 심리가 결여됨

- 판결문은 합의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함"이라고 실시하면서도, 정작 본건 합의가 피해자의 피해를 충분히 회복시킨 합의인지에 관해서는 심리하지 않음
- 합의금의 내용·산정 기준·징벌적 손해배상 반영 여부는 양형 반영의 가장 기초적인 검토 대상임에도, 피해자 대리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합의 형성 과정에 관한 진술을 신청하자 "보기 좋지 않다"는 비법률적 사유로 청취를 거부함
- 합의의 양형 반영 취지를 들면서도 그 취지가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심리는 봉쇄한 자기모순적 판결

3) 윤리적 차원의 검토 결여 - '돈으로 목숨을 용서할 수 있는가'

- 판결문은 합의를 양형에 반영하는 근거로 "피해 회복을 금전적으로나마 돕기 위함"이라고 실시함
- 그러나 본건은 재산범 사건이 아니라 23명이 사망한 사건임. 사망한 인간의 생명에 대해 '금전적 피해회복'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양형이유 본문에 전혀 보이지 않음
- 특히 판결문이 인용한 합의 양형 반영의 일반론은 재산범·상해범 등 금전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환원될 수 있는 사건에서 형성된 법리임. 23명 사망의 결과반가치를 단순히 합의금 지급으로 회복 가능한 손해'로 환원하는 것은, 사망 사건에서의 양형 법리에 대한 별도의 숙고가 필요함에도 그 검토가 없음

4) 합의의 내용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양형에 반영할 필요성

- 판결문은 합의를 일률적으로 감경요소로만 다룸. 그러나 본건과 같이 ① 회사가 합의 과정에서 외국인 유족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차별적 합의안을 송부

하고, ② 시한부 압박과 공탁 통고를 병행하며, ③ 처벌불원서를 합의의 전제로 거래하고, ④ 합의 담당자가 망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의견 송치되는 등 2차 가해가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합의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

- 합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민사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가중적 사유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합의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음에도, 본 판결은 이와 같은 가능성은 무시함
- 2심 판결로 인해 유족들은 '내가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가벼운 형을 받게 되었고, 망자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게 되었다'며 자책하는 상황임
- 본 판결은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

나. 유족들의 합의를 진정한 합의로 평가할 수 없는 사정

- 형사 양형에서 합의가 감경요소로 작용하는 본래의 근거는 다음 두 전제임.
 -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것
 -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것
- 본건 합의는 위 두 전제를 모두 충족하지 못함.
 - **충분한 피해회복 X** :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미반영, 일일수익 차별 산정, 중대재해 특성을 반영한 위자료 상향 미반영
 - **자발적 처벌불원 X** : 변호사윤리규약 위반의 직접 교섭, 시한부 압박, 공탁 협박, 처벌불원서를 합의의 전제로 한 거래, 화성시 숙소 지원 종료, 허위의 자력 부족 협박 등 구조적 강박 하에서 형성

1) 변호사윤리장전 제45조 위반의 직접 교섭

- 유족들은 2024. 7. 초경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법률지원단을 민·형사상 대리인으로 선임함. 피고인 측 박혁 변호사·전혜선 노무사는 2024. 7. 5. 교섭 자리, 2024. 7. 23. 법무법인 덕수 사무실 방문, 2024. 7. 30. 위임장 송부 등을 통하여 대리인 선임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 그럼에도 2024. 7. 6. (토)부터 개별 유족에게 합의제시안을 직접 송부
- 수회, 수십회에 걸쳐 유족들에게 연락 : 법률전문가에 의한 일방적 연락으로 인한 유족들의 위축,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45조 위반 소지가 명백**

2) 시한부 압박과 공탁 협박의 병행

- 「2024. 7. 19.까지 신속 합의 시 5천만원 추가 지급(신속합의금)」이라는 회유와 「2024. 7. 19.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회사가 정한 금액을 공탁한다」라는 협박이 동일 문서에 병행 기재됨
- 한국어가 서투르고 법률적 지식이 없는 유족에게 시한부 압박으로 작용함

3) 처벌불원서를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

- 피고인 측은 합의금 지급의 전제로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함
- 심지어 2심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들에게는 "합의하면 사과하겠다"라는 모순된 태도
- 결과적으로 유족들은 처벌불원서를 쓰지 않고는 합의금은 물론 사과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에 놓임

4) 외국인 유족의 취약성을 악용한 차별적 합의안

- 중국 출신 유족에게 길림성 현지 임금 기준 일일수익 산정, 라오스 국적 고주이에 대해 본국 여성 평균수명을 이유로 가동연한 60세 임의 축소, 한국인 고 김병철에게 길림성 기준 임금 적용된 합의안 발송(개별 문건 오발송으로 확인)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던 노동자를 국적·체류자격에 따라 차별 산정한 것으로, 어떠한 법적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가단134568 판결 참조).

5) 화성시 숙소 지원 종료에 따른 강제적 귀국 압박

- 많은 유족들이 2024년 12월까지 화성시 제공 숙소에서 체류하였으나, 숙소 지원 종료 후 한국 내 거주지 마련이 불가능해지자 서둘러 합의하고 중국으로 귀국함
- 본건 합의 중 다수는 '귀국하지 않으면 거리에 나앉는 상황'에서 사실상 강제된 것임

6) '회사 자력 부족'을 내세운 허위 협박

- 사측 대리인은 "회사에 자력이 없어서 합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반복

- 박순관은 에스코넥 등을 통하여 상당한 자력을 보유 - 허위 사실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유족을 겁박한 것

7) 합의 담당자에 의한 망자 명예훼손 - 2차 가해

- 전해선 노무사(피고인 측 합의 담당, 박혁 변호사 모친)는 2025. 7. 17. 법 무법인 울촌 주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세미나에서 "사람을 구하지 않고 배 터리를 구해서 37초 만에 23명이 사망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경찰은 2025. 12. 29.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함**
- 합의 담당자가 사망자에게 참사의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 발언을 공개 세미나에서 한 사실 : 본건 합의 전체의 진정성이 부제함을 방증

8) 양형조사 과정 자체의 편향성 - 녹취록·사실확인서로 객관적 입증

- 2심에서 진행된 '양형조사'는 피고인의 입장만 충실히 반영되었고, 유족들의 의사는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내용으로 왜곡되고 생략되었음
-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본건 합의는 양형기준이 전제하는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 '**편향된 양형조사 위에서 형식적으로 도출된 합의**'이며, '23명 전원과 합의'라는 외형적 사실에만 의존하여 형 4분의 3을 감경한 것은 양형심리의 기초를 왜곡한 것임
- 고 엄정정의 모 이순희(2026. 2. 2.자 통화): 명백히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양형조사관이 "합의를 본 입장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음"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정리하도록 유도함. 조사 종료 후 특정 종교 기도를 반복적으로 권유 - 객관성·중립성 결여
- 고 김병철의 배우자 최현주(2026. 2. 8.자 통화): 합의 거부의 합리적 사유(망자 책임 전가, 사과와 거래적 태도,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협박, 자녀들의 심각한 2차 피해)가 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음
- 피해자 대리인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연락도 없음** - 반면 피고인 측 박혁 변호사에 대하여는 대면조사·전화조사 모두 실시함
- 고 강금복의 배우자 문영생: 피해자 대리인이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조사불능" 분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손진우의 사실확인서: 참사 직후 약 100일간 화성시청 상황실에 상주한 자로서, "박순관·박중언이 20일간 매일 분향소를 방문하였다"는 피고인 측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확인

- 2심의 논리("합의 후 처벌 의사 표명을 이유로 양형 반영을 제한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포기하게 된다")는 '**피고인이 자발적·진정성 있게 피해 회복에 임한 사건**'을 전제로 한 논리임. 본건과 같이 ① 유족의 공식 교섭을 거부하고, ② 외국인 유족의 취약성을 악용한 차별적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송부하며, ③ 시한부 압박과 공탁 협박을 병행하고, ④ 처벌불원서를 합의의 전제로 거래하며, ⑤ 합의 담당자가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가해가 심한 사건에서, 합의 후 처벌 의사 표명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강박적·기만적 합의에 양형상 면죄부를 부여**하게 됨
- 이는 2심이 의도한 입법정책적 목적('피해회복 인센티브의 보호')과 정반대의 효과를 낳음
- 오히려 본건과 같은 사건에서는 합의 형성의 과정·진정성을 엄밀히 심사하고, 강박적 합의에 대해서는 양형 반영을 제한하는 것이 **장래의 사업주에게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을 유도**하는 정책적으로 타당한 판단임

다. 다수 사망 사건일수록 형이 더 줄어드는 모순

- 합의 효과가 '인당' 비례적으로 적용된다면, **사망자 수가 많을수록 1인당 감경 효과가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더 큰 폭의 감형이 발생**함
- 이는 다수 사망의 결과반가치를 형의 본질에 반영하기 위해 설정된 중처벌 제6조의 법정형 구조와 정면으로 배치됨
-

라.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878 판결의 시사점

- "피해자 유족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망한 피해 근로자를 대신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구할 의사표시를 완전히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산업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에 기한 사망사고 발생 빈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은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 본건은 위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함(23명 사망, 중처법 적용, 6가지 핵심 의무 전면 위반, 합의 형성의 강박적 성격). 위 법리가 본건에서 더욱 강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2심은 정반대의 판단을 함.

2. 판단② 비판 -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지 않았다"라는 평가의 부당성

- 판결문은 양형이유 본문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을 완전히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박순관, 박중언은 ①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의 사기행위로 군납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생산하였고, ② 품질문제로 납품이 중단되고 지체상금이 발생하자, 일 5,000개라는 무리한 생산 목표를 세우며 파견 노동자를 별다른 교육 없이 주요 생산 과정에 투입하였고, ③ 폭발위험성이 높은 리튬 전지를 생산하면서 중처법상 의무를 ‘전혀’이행하지 않았음
- 그러나 2심 판결은 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안전 확보 조치를 방치 않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함

가. 동일 양형이유 중에서도 발생하는 내적 모순

- 2심은 같은 양형이유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기도 하였음
 - "리튬을 사용한 전지의 폭발 위험성은 여러 사례를 통해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었고 아리셀에서는 이미 여러 번 폭발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화재 직전에는 선행 폭발 사고라는 중요한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발열 전지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안일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조치나 대비 없이 후속공정을 계속하였다."
 -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은 후속공정의 중단 및 화재나 폭발 시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은 매우 중하다."

- 박순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즉 시스템 구축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대표이사"
- 박중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다"
- 선행 폭발이라는 전조증상조차 무시하고 후속공정을 계속한 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방치한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이행 인식이 미약한 자가 어떻게 동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을 완전히 방치하지 않은 자"로 평가된 바, 동일 양형이유 본문 내에서 정합성을 갖추지 못함

나. 1심에서 인정된 6가지 핵심 의무 위반과의 모순

- 박순관, 박중언에 대해 2심도 인정한 1심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열감지기 설치 의무 위반
 - 후속공정 중단 또는 발열검사·분리보관 의무 위반
 - 정기안전보건교육 의무 위반
 -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위반
 - 소방훈련 및 교육 의무 위반
 -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 다수 위반
- 위는 산안법과 중처법이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핵심적 의무들이며, 이를 모두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라는 평가와 양립할 수 없음
- 기타 인정된 범행
 - 박중언: 건축법 위반 대수선, 장기간 불법파견, 군납 전지 품질보증검사 통과를 위한 수검용 전지 교체(업무방해+사기, 편취금액 52억원)
 - 홍성춘: 2022년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 박재형: 2023년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문서 작성
- 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된 사건에서, 판결문은 어떤 근거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구조 잠탈

- '이익만 추구하였다'라는 적극적 동기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보건 경시를 부정하는 것은, 중처법의 책임구조를 잠탈함.
- 중처법 제4조 제1항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라는 직위의무 부과
- 중처법은 '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의도가 있었는가'를 묻는 법이 아니라, '안전보건체계 구축의무를 다하였는가'를 묻는 법
- 따라서 양형 단계에서 '이익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라는 동기적 평가를 결정적 감경요소로 삼는 것은, 중처법의 의무위반 책임구조를 양형 단계에서 다시 한 번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함

라. 사전예방 vs 사후합의의 실질적 효과 역전

- 본 판결이 선례로 작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형성되는 효과 구조는 다음과 같이 역전됨

구분	사전예방	사후처리
비용	열감지기·발열검사·교육·위험성평가·비상통로 등 지속 투자	합의금(징벌적 손해배상 미반영 + 일실수익 차별 산정)
형사적 효과	의무 이행 시 처벌 회피	합의 시 형의 파격적 감형

- 즉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전 안전 투자'보다 '사후 합의 처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구조가 성립함
- 이는 중처법이 본래 설정한 효과 구조(사전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유인)를 정면으로 역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본 판결은 "중처법을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판결임

3. 박중언 양형 - '죄형균형원칙·책임주의' 논리의 오용

- 2심은 박중언에 대하여 처단형 3년~45년의 범위 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그 논거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금고 5년 이하)을 들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정형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양형을 정하는 것이 죄형 균형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맞는다」라고 판시함

가. 다수 사망 사건의 특수성 미반영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1죄의 법정형(금고 5년 이하)은 **사망자 1인을 전제로 한 법정형임**
- 23명 사망의 경우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처단형이 가중되며, 이 가중은 **법정형 자체가 다수 사망의 결과반가치를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 2심의 논리대로라면, 사망자가 1인이든 23인이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 5년이 양형의 사실상의 상한 기준이 됨. 이는 **'다수 사망 사건에서의 결과반가치를 양형에서 무력화'**하는 결과로서, 죄형균형원칙·책임주의 원칙의 본래 의미와 정반대임.

나. 산안법·중처법 위반 부분의 평가절하

- 박중언에 대한 처단형 3년~45년의 상한은 산안법·중처법 위반 부분이 합산되어 형성되어야 함에도 2심은 양형이유에서 산안법·중처법 위반 부분의 양형상 비중을 명시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만을 양형 기준으로 강조함
- 이는 산안법·중처법의 입법목적(다수 사망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책임 강화)을 양형 단계에서 다시 형해화하는 것임

4. 소 결

- 23명 사망의 결과반가치를 정면으로 외면한 채, 합의·동기 평가를 통해 1심 형량의 약 4분의 1로 감형한 것은 **중처법의 형사적 억제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임**
- 2심은 양형이유 본문에서 ① "선행 폭발 사고라는 중요한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후속공정을 계속하였다", ② 박순관에 대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의무를 방치한 대표이사"라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③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지 않았고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함. 동일 양형 이유 본문 내에서 내적 정합성이 결여됨.

- 본건 합의는 회사 입장에서 중처법 제15조 징벌적 손해배상을 사실상 면탈하면서 민사채권을 저가에 변제하는 의미 외에 다른 실질이 없음에도 2심은 합의 형성 과정·자발성·진정성에 관한 심리를 거부한 채, '23명 전원과 합의'라는 외형적 결과만을 결정적 감경요소로 채택함
- 결국 합리적 양형사유가 제시된 채 피고인들의 형이 감형된 것이 아니라, '감형하기로 답을 정하고 사실관계를 짜맞춘 판결'

Ⅲ. 재판진행 전반에 관한 비판적 검토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수령 거부

- 신현일 재판장은 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는 받지 않겠다**」, 「**의견서를 내도 읽지 않겠다**」라고 공언하였음
- 그러나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34조의11은 재판장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 대리인에게 공소사실 외의 사항에 관하여 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일 뿐, **의견서의 제출을 금지하거나 재판부가 의견서를 수령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규정이므로, 그 미규정 사항에 대하여는 재판장이 피해자 절차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함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27조)에 부합함.
- 특히 2심은 산안법상 비상구·비상통로 유지의무 등에 대하여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유추해석할 수 없다**」라는 명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면서도, 형사소송규칙 해석에서는 정반대로 **명문에 없는 '의견서 제출 금지'를 도출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함. 동일한 재판부가 동일 사건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격해석 원칙을 들어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명문 없는 제한을 신설하여 배제한 것임.

2.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침해

1) 마지막 공판에서의 피해자 진술 청취 거부 시도

- 신현일 재판장은 마지막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또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문의함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원칙적 의무규정인데, 23명 사망 사건의 마지막 공판에서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위 조항의 규범적 무게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2) 합의 과정에 관한 피해자 대리인 진술 거부

- 피해자 대리인이 합의의 형성 과정·자발성·진정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피해자

대리인 진술을 신청하자, 재판장은 "합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라고 발언하며 거부함

- 그러나 정작 그 합의는 형량을 1심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하는 결정적 양형 자료로 판결에 인용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합의'라는 결과만 양형에 반영하고, 그 합의의 형성 과정·진정성에 관한 심리는 차단한 것임

3. 감치 위협 등 유족에 대한 강압적 재판 운영

1) 선고 직후의 감치 위협

- 선고 직후 유족들이 "왜 이게 4년밖에 안 되느냐", "23명이 죽었는데 4년이 무엇이냐"라고 울부짖자, 재판장은 「발언한 사람들은 모두 자리를 지키도록 하라」, 「유족이 아니라면 감치할 수 있다」라고 발언함
- 법정 등의 질서유지권(법원조직법 제58조, 제61조)은 법정의 심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선고 종료 직후 23명을 잃은 유족의 정당한 분노 표현에 대해 행사할 성질의 권한이 아님

2) 경위 동원 및 강제 퇴정 운영

- 이러한 재판부의 재판 운영은 공판기일 첫 날부터 반복되었음
- 공판을 다 마친 상황에서 피해자가 울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항의를 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다시 재판정에 들어와 "유족이 아니면 감치하겠다. 유족이면 재판에 들어오지 못하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음
- 실제 2심 재판은 선고기일 이전부터 일관되게, 공판 종료 시마다 다수의 경위가 법정에 진입하여 유족·피해자 대리인 측이 먼저 강제 퇴정한 다음, 김앤장 변호사 등 피고인 측이 안전하게 퇴정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그 결과 유족들은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집을 쫓겨 도망치듯 나와야 했음
- 법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자(피해자·유족)가 위협의 대상이 되고, 책임을 추궁받아야 할 자(피고인)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비정상적 구조.

4. 소 결

-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수령 거부, 피해자 진술 청취 거부 시도, 합의 과정 진술 차단, 감치 위협, 경위 동원 강제 퇴장 등 일련의 운영방식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배제라는 명백한 비대칭** 위에 서 있음
- 위 비대칭은 결과적으로 2심 양형 결론의 **절차적 정당성을 결정적으로 훼손** 하는데, 즉 본건 2심의 양형 결론은 단지 '결론의 부당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절차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함**
- 이러한 절차 위에서 형성된 양형 결론은, 그 결론의 당부와 별개로 사법에 대한 신뢰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IV.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 검토

1.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 형법 제123조의2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처벌함
-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단서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법리적 다툼·사실평가의 오판은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본 사안은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2. 사안의 경우

가. 피해자의 재판상 진술권·의견서 제출권 제한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피해자 증인신문 의무규정),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제11(피해자 대리인 절차참여 보장)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마지막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 청취를 거부하고("또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합의 형성 과정에 관한 피해자 대리인 진술도 비법률적 사유("보기 좋지 않다")로 거부함
-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는 "받지 않겠다", "내도 읽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형사소송규칙에는 의견서 제출 금지의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수령을 거부한 점은 적용 근거가 없는 제한을 한 사정에 해당함

나. 양형조사 편향성에 대한 시정 의무 미이행

- 양형조사관이 유족(이순희)의 명시적 처벌 의사("처벌을 원합니다")를 애매한 문구로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특정 종교 기도를 반복 권유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확인되는 등 심각한 편향이 드러남
- 피해자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밝혔음에도 양형조사보고서의 편향성을 시정하지 않은 채 그 결론을 양형의 결정적 자료로 채택

다. 대법원 리딩케이스 적용 누락

- 대법원 2020도3996 판결(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건)은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였는지를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
- 본건은 그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함에도(아리셀의 다수 선행 폭발 사고와 직전 전조증상 - 판결문 자신이 인정한 사실), 2심은 안전보건규칙 제17조·제18조 해석에서 위 리딩케이스를 전혀 인용·적용하지 않았음
- 법관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주지한 판례 법리를 적용하지 않은 사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